

동작구의회공고 제2019-4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장애인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 학부모들의 교복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장애인 학생의 교육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에 힘쓰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나. 지원대상 (안 제3조)
- 다. 지원시기 (안 제4조)
- 라. 지원기준 (안 제5조)
- 마.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회의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20-1474, E-mail : dongsuyeo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학생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학생”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장애인 학생이 교복(동복, 하복)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자는 장애인 학생 중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서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 학생으로 한다.

제4조(지원시기) ① 교복구입비는 매년 중·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대상자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교복구입비 지원은 동복, 하복 각각 한 차례로 한정한다.

제5조(지원기준)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로 총 3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받는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신청 사항 등을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재학 여부 및 신청서 등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원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 학생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	학교		학년	반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학생과의 관계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				예금주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지원여부	지원받음(), 지원받지 않음()		지원금액	원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신청인 구비 서류	1. 통장사본 1부(신청인 본인 또는 신청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에 한함) 2. 재학증명서(학교 배정통지서) 1부. 3. 장애인 증명서 1부. 4. 교복구입 영수증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복구입비 지원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